



: 2020-0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44148 손해배상(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창환, 윤택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제설, 김근태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1억 2,000만 원,
 - 나.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1,000만 원,



: 2020-03-09

다.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고 피고 F과 연대하여 1,000만 원,

라. 피고 C은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200,001,000원,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70,001,000원, 피고 F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200,001,000원 중 30,000,000원,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200,001,000원 중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G에서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가 쉬운 테이프 형태로 제조한 H 및 I(이하 '원고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H 제품을 위탁판매 하던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2008. 9. 1.부터 2010. 9. 18.까지 원고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회사 퇴직 후 2012. 6. 내지 8.경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은 2010. 10. 27.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회사 퇴직 후 2011. 11. 1.부터 피고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E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7. 31.까지 원고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라. 원고는 원고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에 관한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여 위하여,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피고 C, D 등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퇴사 등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은 회사에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회사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3. 7.부터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안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관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였으며, 2011. 4.경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경 원고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2014. 6. 25. 그와 같은 유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피고들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피고 C, D, F을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C, D, E, F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21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733호, 상고심인 대법원 2018도18785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최종적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다만,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은 제외)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

1. 피고 C

가.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C은 2012. 6. 18.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 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L 제어기를 제작할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케미컬 테스트201008.xls(원고 H 화학용액 테스트 데이터)'를 피고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② 중 연번 1번 및 2번의 1), 2),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2. 6. ~ 8.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M'을 사용하여 피고 B의 'N'을 작성하고, 원고의 'O'를 사용하여 피고 B의 'P'를 작성하는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 D[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2. 3. 18. 별지 범죄일람표 2)-② 중 연번 1번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12. 4. 3. 같은 표 중 연번 2번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2. 4.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③ 중 연번 2번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2012. 9. 6.경 같은 표 중 연번 3번의 1), 2), 6)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 E[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

피고 E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7. 31.까지 원고 회사의 센서 관련 기술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E은 2012. 3.경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 회사의 영업현황 등을 알고 싶어 하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자신의 원고 회사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원고 회사 서버에 접속한 후, 2012. 3. 18. 및 2012. 4. 3. 두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② 중 연번 1번의 2)항 및 연번 2번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영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 F[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 F은 2009.부터 2012. 5.까지 원고 회사의 H 제품을 위탁판매하던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2. 4. 3.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2번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대상자료는 아래와 같다.

- 1) 대상자료 ①: 피고 D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반출하였다가 피고 C에게 전송하여 누설하고 피고 C이 부정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1)

연번	파일명	내용
1	케미컬테스트 201008.xls	원고의 H 화학용액 테스트 데이터(작성자 : 원고 회사 Q 소장)
2	기름반응/폴리머에 따른 기름 반응테스트.xls	R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3	기름반응/폴리머에 시료테스트.xls	R 폴리머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4	Oil(4).ppt	I 핵심기술 실험실계도

- 2) 대상자료 ②: 피고 D이 피고 E의 방조 하에 피고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고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부정취득하고, 피고 F이 피고 D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부정취득한²⁾ 원고의 영업비밀(이하 연번 1 파일을 '발전소별 가격 파

1) 다만 연번 1번 '케미컬테스트 201008.xls' 파일에 관하여는,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D의 영업비밀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F이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은 피고 D이 누설한 '2012년 영업매출계획_0327수정.xls' 파일에 한한다.



일'이라 하고, 연번 2 파일을 '매출계획 파일'이라 한다)

연번	파일명	내용
1	발전소별 센서 및 제어기가 격.xls	원고 발전소별 고객사 판매 제품 단가표
2	2012년영업매출계획_0327수 정.xls	원고의 2012년 영업매출계획 전략표

3) 대상자료 ③: 피고 C이 이에 기초하여 임의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

연번	파일명	내용
1	M	원고 제품(모델 S)의 소스 프로그램 원본
2	O	원고 제품(모델 T)의 소스 프로그램 원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정법³⁾ 제14조의2 제5항, 저작권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재량에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2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와 같이 약칭한다. 이하 같다.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되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침해행위	적용법조 등	손해배상금
C	대상자료 ① 부정취득	영업비밀침해행위 [구 부정법 제 2조 제3호 (가)목]	150,001,000원
	대상자료 ③의 2차적 저작물 작성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권법 제22조)	20,000,000원
D	대상자료 ① 누설	대상자료 ①: 영업비밀침해행위 [구 부정법 제2조 제3호 (라)목], 피고 C의 대상자료 ① 부정취득 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 760조 제1항)	200,001,000원
	대상자료 ② 부정취득	대상자료 ②: 영업비밀침해행위 [구 부정법 제2조 제3호 (가)목]	
E	대상자료 ② 부정취득 방조	피고 D의 대상자료 ② 부정취득 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 760조 제3항)	30,000,000원
F	대상자료 ② 중 '매출 계획 파일' 부정취득	영업비밀침해행위 [구 부정법 제 2조 제3호 (가)목], 피고 D의 대상자료 ② 중 '매출계획 파일' 부정취득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1항)	30,000,000원
B		피용자인 피고 C, D에 대한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대표자인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200,001,000원



나.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책임 관련

가) 대상자료 ① 및 대상자료 ②에 관한 피고 D, C, E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한 손해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나) 대상자료 ③에 관한 피고 C의 책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 B는 프리랜서인 피고 C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는 도급의 성격을 갖고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지도 및 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2. 8.경이고, 늦어도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한 2014. 6. 25.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 6.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대상자료 ①, ②의 영업비밀 해당여부

구 부정경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



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상자료 ① 및 대상자료 ②가 위와 같은 구 부경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상자료 ①, ②에 관한 피고 C, D, E, F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인 대상자료 ①과 관련하여 피고 D이 누설하여 피고 C이 부정취득한 행위와 대상자료 ②와 관련하여 피고 D, F⁴⁾이 부정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C, D, F은 구 부경법 제11조에 따라, 피고 D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을 방조한 피고 E은 구 부경법 제11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자료 ③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C이 대상자료 ③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N 및 P을 작성한 각 행위가 원고의 위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

4) 대상자료 ② 중 '매출계획 파일'에 한한다.



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2) 대상자료 ①, ② 관련 피고 D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D는 2012. 6. 18. 및 2012. 9. 6. 피고 C에게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위 자료를 피고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B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이 경쟁사인 원고의 고객사 및 영업매출계획에 관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B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대상자료 ③의 2차적저작물 작성 관련 피고 C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B의 제품에 관한 회로도 및 프로그램 개발하여 원고의 2차적저



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2. 6.경 피고 B와 사이에 1천만 원을 받고 원고 회사의 U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 B의 V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대상자료 ③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위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F의 행위에 대한 피고 B의 연대책임

피고 F은 원고 회사의 H 제품을 위탁판매하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 D이 부정취득한 대상자료 ② 중 '매출계획 파일'을 부정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F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F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마.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그러한 유사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2014. 6. 25. 피고 C, D, F을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은 위 고소 당시 피고 F, D, C이 주도하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소외 W, X, Y, Z 등 및 제품유통 협력사 등이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 유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주범으로 지목되는 3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5. 5. 29. 피고 C, D, E, F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정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일부 혐의가 무죄, 피고 E, F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각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피고 C, D, F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변경되고, 그와 같은 항소심 판결이 2019. 7. 10.에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 C, D, E, F의 대상자료 ①, ②의 취득 및 누설 경위, 대상자료 ③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시까지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고소 당시 또는 그 보다 이전인 2012. 8.경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실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4.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8. 4. 각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는 사정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참조).

2) 대상자료 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대상자료 ①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기술자료 및 설계자료이다.
- 그 중 '연번 1' 자료에는 원고 제품의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실험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고, '연번 2' 자료에는 전도성 폴리머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대한 저항 변화 측정 방법 및 측정값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번 3' 자료에는 4가지 종류의 전도성 폴리머 시료가 휘발유에 반응 시 발생하는 저항 변화 및 충격에 따



른 저항 변화를 실험한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고, '연번 4' 자료는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원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 구상을 하기 위해 도면화하여 작성한 개발 자료이다.

- 위와 같은 자료 없이 처음부터 원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3) 대상자료 ②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연번 1' 자료는 원고가 각 발전소별로 판매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공급한 센서 및 제어기 가격에 관한 자료로서, 경쟁사가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원고 회사와 해당 발전소 사이의 거래관계가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 원고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B2B'로 판매되는데, '연번 2'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원고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위 자료가 경쟁자들에게 알려지면 원고 회사 유통망이 잠식되어 원고 회사의 영업 계획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대상자료 ①, ②, ③에 공통된 사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는 원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개발비로 투입한 비용은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른다.

- 다만 피고들의 영업비밀침해 대상으로 공소제기된 여러 자료 중 적지 않은 자료가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었다.



나. 피고별 손해배상액 산정

위와 같은 사정,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나 영업의 동종성 및 시장상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분쟁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피고들이 보인 태도나 권리침해의 고의성,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의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료별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다.

1) 대상자료 ① 관련

피고 C,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1억 2,000만 원

2) 대상자료 ② 중 연번 1 관련

피고 D, E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B, D, E은 공동하여 1,000만 원

3) 대상자료 ② 중 연번 2 관련

피고 D, E, F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피고 F에 대한 상법상 대표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피고 B는 피고 D과 공동하고 피고 F과 연대하여 1,000만 원

4) 대상자료 ③ 관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1,000만 원

5.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위 1억 2,000만 원, 피고 B, D, E은 공동하여 위 1,000만 원,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피고 B는 피고 D과 공동하고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1,000만 원, 피고 C은 위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



: 2020-03-09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호준

 판사 김영기

 판사 이상현



: 2020-03-09

◎ 1)-② C 의 범죄일람표 (부정취득)

연도	취득일자	보낸사람	받는사람	메일제목	중요 첨부파일명	메일 및 파일내용
1	12.06.18			케미컬 테스트 자료	케미컬 테스트201008.xls	피해회사 [] 화학용액 테스트 데이터 (작성자 : [] 소장)
					기름감지.zip	피해회사 [] 핵심 기술자료 압축파일
2	12.09.06			기름자료	1) 기름반응/ 폴리머에 따른 기름 반응테스트.xls	피해회사 []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2) 기름반응/ 폴리머 시료 테스트.xls	피해회사 [] 폴리머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3) TEST091221/TEST REPORT.pdf	피해회사 [] [] 연구원 시험성적서 공증 받은 자료(영문)
					4) [] 연구원.pdf	피해회사 [] [] 연구원 시험성적서 공증 받은 자료(번역)
					5) oil(3).ppt	피해회사 [] 핵심 설계 구조도 및 제조방법
					6) oil(4).ppt	피해회사 [] 핵심기술 실험 설계도
					7) OIL.pdf	피해회사 [] [] 연구원 무문 시험성적서 공증 받은 자료



: 2020-03-09

◎ 2)-② D 범죱일람표 (부정취득)

번호	취득일자	취득장소	취득방법	파일명	파일내용
1	12.03.18.	수원시 권선구 [] [] (주)	피의자 []의 아이디로 피해회사 서버접속	바탕 화면.zip	피해회사 주요고객 영업매출계획서 압축파일
				1) 20120313015852.pdf	피해회사 영업부 수주매출 집중 계획 회의록
				2) 발전소별 센서 및 제어기가격.xls	피해회사 발전소별 고객사 판매 제품 단가표
				3) [].pdf	고객사 [] 견적서
				4) 이메일주소.bmp	피해회사 직원 []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서버에 접근한 흔적을 알수 있는 캡처화면 (왼쪽 창은 []아이디로 접속한 캡처화면이고, 오른쪽 창은 []의 바탕화면에 배경으로 설정된 []의 딸들 사진임.)
5) [].pdf	고객사 [] (논현+인천 남동점) 누수감지 견적서				
2	12.04.03.	상동	상동	바탕 화면.zip	피해회사 주요고객 발전소 영업매출계획 및 이메일 정보
				1) 2012년 영업매출계획.0327 수정.xls	피해회사 2012년 영업매출계획 전략표
				2) 20120309영업부주례보고.doc	피해회사 영업팀 12. 03. 05.부터 12. 03. 09.주례보고로 []이 퇴직시 습득한 것으로 미루어 []의 아이디로 부정하게 접속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
				3) []부장 거래 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4) []부장거래처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5) [].pdf	고객사 []작업 견적서				



: 2020-03-09

◎ 2)-③ D **범죄일람표 (누설)**

연도	누설일자	보낸사람 (누설방법)	받는 사람	메일제목	중요 첨부파일명	메일 및 파일내용
1	12.03.18.				1) 20120313015852.pdf	피해회사 영업부 수주매출 집중 계획 회의록
					2) [redacted].pdf	고객사 [redacted] (논현+인천 남동점) 누수감지 견적서
2	12.04.03.		자료입니다.		바탕 화면.zip	피해회사 주요고객 발전소 영업매출계획 및 이메일 정보
					1) 2012년 영업매출계획_0327 수정.xls	피해회사 2012년 영업매출계획 전략표
					2) 20120309영업부주제보고.doc	피해회사 영업팀 12. 03. 05.부터 12. 03. 09.주제보고로 [redacted]이 퇴직시 습득한 것으로 미루어 [redacted]의 아이디로 부정하게 접속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
					3) [redacted]부장 거래 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4) [redacted]부장거래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5) [redacted].pdf	고객사 [redacted] 작업 견적서
3	12.09.06.		기름자료		기름감지.zip	피해회사 [redacted] 핵심 기술자료 압축파일
					1) 기름반응/ 폴리머에 따른 기름 반응테스트.xls	피해회사 [redacted]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2) 기름반응/ 폴리머 시료 테스트.xls	피해회사 [redacted] 폴리머 기름 반응테스트 자료
					3) TEST091221/TEST REPORT.pdf	피해회사 [redacted] 연구원 시험성적서 공중 받은 자료(영문)
					4) [redacted]연구원.pdf	피해회사 [redacted] 연구원 시험성적서 공중 받은 자료(번역)
					5) oil(3).ppt	피해회사 [redacted] 핵심 설계 구조도 및 제조방법
					6) oil(4).ppt	피해회사 [redacted] 핵심기술 실험 설계도
4	14.05.21.		protocol		1) [redacted] 통신프로토콜 [redacted].ppt	1) 피해회사 제이기 통신 데이터 세부 기준 값 국문 문서 파일 (작성자 : [redacted] 소장)
					2) [redacted].doc	2) 피해회사 제이기 통신 데이터 세부 기준 값 영문 문서 파일 (작성자 : [redacted] 번역 의리)



: 2020-03-09

◎ 4) F 범죱일람표 (부정취득)

번호	취득일자	보낸사람 (누설방법)	받은사람	메일제목	중요 첨부파일명	메일 및 파일내용		
1	12.03.18				1) 20120313015852.pdf	피해회사 영업부 수주매출 집중 계획 회의록		
					2) [] .pdf	고객사 [] (논현+인천 남동점) 누수감지 견적서		
2	12.04.03.				바탕 화면.zip	피해회사 주요고객 발전소 영업매출계획 및 이메일 정보		
					1) 2012년 영업매출계획_0327 수정.xls	피해회사 2012년 영업매출계획 전략표		
					2) 20120309영업부주례보고.doc	피해회사 영업팀 12. 03. 05.부터 12. 03. 09.주례보고로 [] 이 퇴직시 습득한 것으로 미루어 [] 의 아이디로 부정하게 접속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		
					3) [] 부장 거래 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4) [] 부장거래처리스트.xls	피해회사 주요고객 거래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3	14.05.21.						5) [] .pdf	고객사 [] 작업 견적서
					protocol		1) [] 통신프로토콜 .ppt	1) 피해회사 제어기 통신 데이터 세부 기준 값 국문 문서 파일 (작성자 : [] 소장)
							2) [] .doc	2) 피해회사 제어기 통신 데이터 세부 기준 값 영문 문서 파일 (작성자 : [] 번역 의뢰)